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공포, 2015. 1. 1시행)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로 삼고자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사업의 구체적인 명시(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나. 예산조치 : '15 당초예산에 1억미만 반영되었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15. 5. 28 ~ 6. 17)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대상 사무 없음.
(4) 보조금심의위원회 : 원안 가결(2015. 6. 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일부”를 “일부 또는 전부”로, “있다”를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새마을운동 대상사업(제3조 관련)

사 업 명
1. 숨은자원모으기사업 2. 새마을공원관리사업 3. 사랑의김장담가주기사업 4. 문예지발간사업 5. 새마을문고운영사업 6. 한글학교운영사업 7. 국민운동단체역량강화교육사업 8. 깨끗한우리마을만들기사업 9.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사업 10.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11.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 12.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지원)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지원) ---------- ---------- ---------- ---------- ---------- ---------- ---------- ---일부 또는 전부----------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